###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9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정태호·박민규·이학영

김교흥 • 한병도 • 김주영

임광현 · 이수진 · 김영환

송옥주 · 손명수 · 서영교

강준현 • 이연희 • 최기상

의원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것인데,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 (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 조제6항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6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5년 1월 1	2030년 1월	2031년 1월	2032년 1월	2033년 1월
일부터 2029년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일부터 12
12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	6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	
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1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	
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	
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	
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1월 1일 부터 12	2027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2028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	100분
100	80	60	의 40	의 20

## 2. (생략)

⑦・⑧ (생 략)

2025년 1 월 1일부 터 2029 년 12월 31일까지	1월 1일	1월 1일 부터 12	2032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2033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00분	100분
100	80	60	의 40	의 20

## 2.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